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0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철규·김소희·신성범

서명옥 • 임종득 • 김선교

강승규 • 박상웅 • 서일준

송언석 • 유상범 • 조정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, 전기차·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 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·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 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'핵심광물'을 정의하면서 '광물'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, 즉, 리튬, 니켈 등이 탄산리튬,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·수입·전환·가공·수송·저장·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,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,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·평가를 실시하는데 필 요한 수출입 정보 등 「관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'핵심광물'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「관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, 국제협력사업·연구개발사업· 인력양성 및 교육·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·자원시장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 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 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나목·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 5호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고시하는 광물"을 "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"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"수입량"을 "수입량·가격(「관세법」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품목별, 수입업자·수출업자별, 국가별 수출입량 및 수출입가격 등 수출입 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5호 중 "사항"을 "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4호 중 "사항"을 "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"사항"을 "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제1항제5호, 제37조제1

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"핵심자원"이란 국민생활에	1
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	
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	
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	
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·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광업법」 제3조제1호에	나
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	
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	
장관이 정하여 <u>고시하는</u>	<u>고</u> 시하는 광
<u>광물</u> (이하 "핵심광물"이라	물 및 그 광산물
한다)	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)	제8조(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	②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	
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	
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	

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핵심자원의 비축물량, 재고,수급 현황·전망 및 수출량·수입량

- 3. ~ 7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36조(국제협력) ① 정부는 자원 제 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<u>사항</u>

② (생 략)
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수입량·가격(「관세법」 제1
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
서 품목별, 수입업자·수출업
자별, 국가별 수출입량 및 수
출입가격 등 수출입 내역에
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
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]36조(국제협력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사항스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<u>항</u>
②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연구개발) ① 정부는 자원	제37조(연구개발) ①
안보에 필요한 정책・기술의	
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	
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	
있다.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	4
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	
필요한 <u>사항</u>	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인력양성 및 교육·홍보)	제38조(인력양성 및 교육·홍보)
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	①
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	
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	
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	3
인력의 양성 및 교육・홍보	
등에 필요한 <u>사항</u>	사항으로서 대통령
	<u>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
②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